

[별 표] <개정 2007.7.3>

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(제2조 내지 제4조의2 및 제11조관련)

(단위 : 년)

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
교수	4	6	10	5	8	13
부교수	3	4	7	4	6	10
조교수	2	2	4	3	4	7
전임강사	2	1	3	2	3	5
조교	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					

비고 :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.